

# 가평군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기 획 감 사 실  
[ 예 산 팀 ]

#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연도 : 2009. 10. 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0.10.31. 조례 제2208호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일부개정)
- 일부개정 :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4.09.30 조례 제2372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237	533	20,967	2,466	581	1,885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2014년 통합관리기금 총 적립액 : 12,259백만원
- 연도별 예탁사업 현황
  - 2011년 : 6,370백만원(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건)
  - 2012년 : 2,100백만원(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외 1건)
  - 2013년 : 0백만원

○ 발전방안

- 가평군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가평군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기금의 보유 자금 중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통합 운용·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일반회계 예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분	지적내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4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	없음	

####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표 4-1)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7,335	%	11,035	%	16,08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877	39	3,297	30	3,297	21
	예치금회수	1,399	19	4,731	43	9,555	59
	예수금	2,559	35	2,510	23	2,698	17
	이자수입	500	7	497	4	538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355	%	11,035	%	16,088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100	29			5,000	31
	예치금	4,731	64	9,555	87	10,555	6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504	7	1,480	13	533	3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지방채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

- 설치연도 : 2000. 12. 28. 조례 제1685호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2001.10.01 조례 제1744호

- 일부개정 2009.07.07 조례 제2062호

-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 :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4.09.30. 조례 제2372호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4	0	353	206	-	206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2014년 지방채상환기금 총적립액 : 353백만원

- 이 자 수 입 : 4백만원

○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재원을 적립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연차적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	고금리 지방채 일부상환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표 4-1)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39	%	1,033	%	204	%	
	전입금					200	9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000	97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39	100	33	3	4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9	%	1,033	%	204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9	100	33	3	204	100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1,000	97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1613호)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

▶설치연도 등

- 설치연도 : 1991. 6. 2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17	81	6,447	409	126	283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 아하자활근로사업단 지원 10,000천원
- 아동복지 지원사업 :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2,000천원  
어린이날 큰잔치 924천원
- 여성복지 지원사업 : 가평 여성대회 5,000천원  
합동결혼식 10,000천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 지원 22,000천원  
노인복지 활동지원 3,000천원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장애인 5개단체 복지사업 추진 18,500천원  
(장애인축제 한마당행사,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교통사고줄이기경기도민결의대회, 하계수련회 등)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기재

- 전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 어린이집 한마음잔치는 아동과 부모,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부모교육,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함
- 다문화 동거부부 5쌍을 선정 합동결혼식을 진행하여, 문화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인식제고의 기회가 되었으며 가평여성대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대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
- 대한노인회 지원을 통하여 가평군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평군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
- 노인 행사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프로그램 활성화로 노인 복지증진 도모
- 장애인단체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여가 선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향상과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함.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사업들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용자사업: 10년이상 장기 체납자 15명에 대해 장기 분납 독려 및 주소지 확인 필요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준비과정에서 행사 중지되어 사업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음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복지욕구 해소
- 용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체 감면을 통한 납부 유도 및 1회 납부금액 조정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계	153	110	72%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0	10	50%	10	10	10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유자사업	50	20	40%	50	0	0%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20	20	100%	20	18	92%
노인복지 지원사업	26	26	100%	30	30	100%
아동복지 지원사업	17	17	100%	17	13	76%
여성복지 지원사업	20	17	85%	25	15	60%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14년 사회복지기금 목표 및 기대효과는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증진 사업 확대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에 일조를 다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비 성격의 운영지원을 원칙으로 기금 운용임

2014년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4개단체), 대한노인회 활동비,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여성대회, 합동결혼식 등 사업비 성격의 운용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에 맞게 이루어져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13년	○ 아하카페 지원-자활사업단(19만원)	○ 아하카페 지원-자활사업단(19만원) 100%
	'14년	○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0백만원)	○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0백만원) 10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	'13년	○ 저소득주민(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전 용자 사업(50백만원, 5명)	○ 저소득주민(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전 용자 사업(40백만원, 4명) 80%
	'14년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사업(50백만원, 5명)	○ 대상자 없음 0%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3년	○ 장애인복지지원사업(20백만원, 5개단체) ○ 장애인의 날 기념식(10백만원, 1회)	○ 장애인복지지원사업(20백만원, 5개단체) 100% ○ 장애인의 날 기념식(10백만원, 1회) 100%
	'14년	○ 장애인복지지원사업(20백만원, 5개단체)	○ 장애인복지지원사업(18백만원, 5개단체) 92%
노인복지 지원사업	'13년	○ 대한노인회 활동비(20백만원, 7개소) ○ 노인행사지원비(5백만원, 2회)	○ 대한노인회 활동비(20백만원, 7개소) 100% ○ 노인행사지원비(5백만원, 2회) 100%
	'14년	○ 대한노인회 활동비(22백만원, 1개소) ○ 어버이날 기념행사(1백만원, 1회) ○ 노인복지 활동지원(4백만원, 2회)	○ 대한노인회 활동비(21백만원, 1개소) 89% ○ 노인복지활동지원(3백만원, 1회)
아동복지 지원사업	'13년	○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 1회) ○ 어버이 날 기념행사(1백만원, 1회) ○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 (5백만원, 1회)	○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 1회) 100% ○ 어버이 날 기념행사(1백만원, 1회) 100% ○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 (5백만원, 1회) 100%
	'14년	○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1회) ○ 어린이날 큰잔치(5백만원/1회)	○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1회) 76% ○ 어린이날 큰잔치(1백만원/1회)
여성복지 지원사업	'13년	○ 에코피아가평 여성대회(10백만원, 1회) ○ 사랑의 합동결혼식(10백만원, 1회) ○ 어린이날 가족행사 지원(5백만원, 1회)	○ 에코피아가평 여성대회(7백만원, 1회) 100% ○ 사랑의 합동결혼식(10백만원, 1회) 100% ○ 어린이날 가족행사 지원(5백만원, 1회) 100%
	'14년	○ 가평 여성대회(15백만원/1회) ○ 합동결혼식(10백만원/1회)	○ 가평 여성대회(5백만원/1회) 60% ○ 합동결혼식(10백만원/1회)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13년	○ 기금 적립중	○ 기금 적립중
	'14년	○ 기금 적립중	○ 기금 적립중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사업 기금의 적립 및 지원으로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 1회 10백만원 지원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5개 단체 11개 사업 18백만원 지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 2개단체(회) 30백만원 지원
- 아동복지 지원사업 : 2회 13백만원 지원
- 여성복지 지원사업 : 2회 15백만원 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2012~2013년 사회복지기금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10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50	신축적 집행	상
③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20	신축적 집행	상
④노인복지 지원사업	26	신축적 집행	상
⑤아동복지 지원사업	17	신축적 집행	상
⑥여성복지 지원사업	20	신축적 집행	상
⑦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안정성(기금 적립중)	상
합 계	143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재원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충당하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이후에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용 재원을 조달 운용토록 계획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은 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원으로 목표액달성 이후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육성지원,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예정

(표 4-1)(사회복지기금 총괄)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586	%	604	%	602	%
	전입금	300	51	300	50	300	5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6	10	40	6	42	7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5	8	102	16	85	14
	예수금						
	이자수입	185	31	162	28	175	2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86	%	604	%	602	%
	비용자성사업비	76	13	90	15	81	14
	융자성사업비	40	7	20	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369	63	409	68	345	57
	예치금	101	17	85	14	176	2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8	%	35	%	4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	53	25	63
	예수금						
	이자수입	18	100	17	47	15	3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8	%	35	%	40	%
	비용자성사업비			10	17	10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	13
	예치금	18	100	25	73	25	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22	%	147	%	12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56	46	40	27	42	3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	30	84	57	57	46
	예수금						
	이자수입	29	24	24	16	25	2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2	%	147	%	124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40	33	20	1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70	46		
	예치금	82	67	57	38	124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23	%	122	%	126	%
	전입금	100	81	100	81	100	7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	1			1	1
	예수금						
	이자수입	22	18	22	19	25	2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3	%	122	%	126	%
	비용자성사업비	9	7	20	16	18	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13	92	102	84	107	85
	예치금	1	1			1	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노인복지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43	%	29	%	3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	16				
	예수금						
	이자수입	36	84	29	100	30	10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	%	29	%	30	%
	비용자성사업비	30	70	26	89	27	9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3	30	3	11		
	예치금					3	1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아동복지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23	%	123	%	126	%
	전입금	100	81	100	83	100	7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3	19	22	17	26	2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3	%	122	%	126	%
	비용자성사업비	12	10	17	14	13	1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11	90	105	85	103	82
	예치금					10	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여성복지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37	%	30	%	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	9
	예수금						
	이자수입	37	100	30	100	30	9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7	%	30	%	33	%
	비용자성사업비	25	67	20	69	15	4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2	33	10	31	5	15
	예치금					13	4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20	%	119	%	123	%
	전입금	100	83	100	84	100	8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	17	19	16	23	1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0	%	119	%	123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20	100	119	100	123	100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문화예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1785호)

- 설치 및 조성목적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 설치연도: 2003. 12. 03. 조례 제1785호
- 일부개정: 2009. 01. 07. 조례 제2042호
- 일부개정: 2009. 10. 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전문개정: 2012. 01. 11. 조례 제2233호
- 전문개정: 2013. 12. 31. 조례 제2344호
- 일부개정: 2014. 09.30 조례 제2374호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0	-	1,156	131	-	131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2014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총 적립금 : 1,156백만원
  - 이자수입 3백만원, 출연금 100백만원
-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가평군의 문화예술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재원 활용을 위해

운용·관리하고 있음.

- 2013년까지 목표재원(10억원) 조성 후 문화예술 관련사업 실시예정이었으나, 군민의 문화 질적 향상과 문화시설 근접성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기금목표액 상향조정이 필요,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금 조성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조성목표액은 15억으로 증액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4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을 위하여 기금 적립운용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 기타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해당 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 없음	
	'13	해당 없음	
	'14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4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합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29	%	94	%	130	%
	전입금	100	78	67	72	100	77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9	22	27	28	30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9	%	129	%	130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29	100	94	100	130	100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1.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회 진흥)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

#### 3. 설치년도

- 2000.1.13(가평군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1	30	1,057	30.4	30	0.4	

## II. 분석결과

### 1. 총 평

가평군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됨에 따라 2011년부터 체육진흥관련 사업을 실시 중 임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우수선수 육성지원 : 30,000천원

####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기재

- 우수선수를 육성지원 함으로서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단체(연합회, 협회) 및 학교(생) 활동지원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지침, 기금사업, 운영 등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기금지원으로 더 많은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확보하여 우수선수육성 등 경쟁력 제고와 가평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군비 출연금으로 목표액인 10억이 조성되어 2011년부터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0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30,000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우수선수육성 등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가평균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 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당없음)

(표 2-3)

사업명	'14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합계		해당없음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으로 목표액인 10억을 확보하여 2011년부터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활동을 통해 105,000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육 관련단체(연합회, 협회) 및 학교(생)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우수선수 육성 및 가평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증액이 필요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의거 체육진흥기금의 수익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됨.
-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표 4-1)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38	%	31	%	3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38	100	31	100	32	100
	기타수입		0				
지 출	합 계	38	%	31	%	32	%
	비용자성사업비	20	53	30	97	30	9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8	47	1	3	2	5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 설치연도 : 2010. 11. 10. 조례 제2144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 2012. 01. 09. 조례 제2224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2. 12. 03. 조례 제2290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문개정 : 2014. 09. 12. 조례 제2369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6	14	96	139	27	112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사업 : 2014년 2가구 / 5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 2014년 81가구 / 9백만원

#### ○ 잘된 점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음

○ 미흡한 점

- 원거리로 사업추진이 곤란해 상수도급수공사를 미실시한 영감이 1가구에 대한 급수대책이 필요하며,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고령 및 장기 관외출타 등으로 지원금 신청시 누락자 발생

○ 발전방안

- 상수도급수공사 미추진 1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 등 급수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신청시 주민협의체 및 이장 등을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회의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하여 본 기금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0	86	66.1	109	14	12.8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123백만원 41가구)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84백만원 39가구)	68.2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2백만원 90가구)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1.5백만원 50가구)	75.0
'14년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7백만원 3가구)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5백만원 2가구)	71.4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10백만원 89가구)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9백만원 81가구)	90.0

- 정성적 성과 평가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사업은 99% 완료되었으며 미추진 1가구에 대하여는 관정 등 생활용수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은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함.

- 외부평가 결과(만족도 조사 포함) : 미 실시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본 기금은 2010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마을회의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상수도급수공사,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실시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당해연도 익월 10일까지 기금으로 전출하여 목적사업 추진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 없음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18	%	130	%	109	%	
	출연금			119	92.2	65	59.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7	99.1	10	7.7	44	40.4	
	예수금							
	이자수입	0.8	0.9	0.4	0.1	0.4	0.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8	%	130	%	109	%	
	고유목적사업비	107	90.6	86	66.1	14	12.8	
	융자금							
	인건비	0.9	1.0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	8.4	44	33.9	95	87.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제 정) 2005.01.14 조례 제1835호
- (일부개정) 2007.12.12 조례 제1960호
- (일부개정) 2008.11.03 조례 제2025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2.01.09 조례 제2225호
- (일부개정) 2013.07.22 조례 제2323호
-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2372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405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현재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93	192	1,283	400	556	△ 156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사건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며,

- 기금의 운용·관리는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장비 자재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본 기금은 유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기금임

## 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2	369	96%	450	247	55%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응급복구사업(208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174백만원)	○ 응급복구사업(208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161백만원)	96%
'14년	○ 응급복구사업(340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110백만원)	○ 응급복구사업(161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86백만원)	55%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은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신속한 응급복구는 물론 재난예방과 관련한 자재의 조달로 수해 및 설해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 할 수 있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li> <li>○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li> </ul>	<p>각종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적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li> <li>○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li> <li>○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사업</li> <li>○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li> <li>○ 소화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li> <li>○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li> <li>○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 사업</li> <li>○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li> <li>○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 등</li> </ul>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응급 복구 사업비, 복구 장비 및 자재비 등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긴급 집행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응급 복구사업	161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② 재난예방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사업	86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47백만원		

####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집행하는 사업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조기 응급복구비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비로서 현행대로 유지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국·도비지원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373	/%	382	/%	505	/%	
	출연금	336	90	354	92	364	7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	1			112	22	
	예수금							
	이자수입	33	9	28	8	29	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73	/%	369	/%	247	/%	
	고유목적사업비	216	58	311	81	192	78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58	16	58	19	55	22	
	예치금	99	2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1. 설치 및 조성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

2.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2008.07.30 조례 제2012호

- (일부개정) 2014.07.07 조례 제2365호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3.1	63.8	29.3	80.2	-	80.2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가평 특성화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3백만원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기재

- 가평역 안내사인, 가로변 쉼터정비, 교각이미지 개선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화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거리환경 조성 등 관광명소 조성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운용 필요

- 2014년도 광고물등 정비를 위해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 적립 없이 “가평 특성화 가로환경 개선사업(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만 전액 지출된 바,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기금운용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2015년도에는 지출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 등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기금목적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122	93.1	76.3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경관개선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4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비 (100,000천원)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 (63,833천원)	63.8%

###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함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4년 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기금용도에 따라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등을 통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4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	해당	없음	-

####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등을 통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가평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며,

- 기금의 용도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 등 추진을 위해 기금 적립을 통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집행하겠음.

(표 4-1)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93.1
	전입금			80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0.1
	기타수입			13
지 출	합 계			93.1
	비용자성사업비			63.8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1.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가평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 3. 설치 연도 등

- 연 혁 : 1986. 11. 11 : 식품진흥기금 설치(보건복지부)  
1989. 1. 1 : 식품진흥기금 지방이양(보건복지부 → 시·도)  
2000. 7. 27 :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시·도, 시·군·구)
- 설 치 : 2002년 2월(조례 제1727호)
- 조례개정 : 개정 2002.10. 1 조례 제1744호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 2004.11.17 조례 제1814호  
개정 2005. 3.15 조례 제1832호  
전부개정 2006.12.18 조례 제1921호  
개정 2006.12.26 조례 제1923호(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2.12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2114호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2372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 목표액 : 없음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현재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6	29	155	34	38	△4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위해 19,800천원을 집행하여 식중독에 예방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근절과 함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5,760천원을 집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기재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통한 음식문화 활성화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과징금 수입의 감소와 기금사업의 활성화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실정임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지침, 기금사업, 기금운영등 전 분야별로 개선, 개발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식품위생정책 및 환경에 적합하며, 식품업소가 피부로 느끼는 기금으로 발전시키고, 업소 진흥지원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식문화 육성등 각종 기금사업을 가능케하여 식품업소의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국회, 정부, 소비자등 모든분야에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고, 실질적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책·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의 목적인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의 본래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나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식생활 개선, 식품산업의 진흥 및 식품위생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함
-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법개정 건의 및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사업의 효과적인 분석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6	31.4	93.4	36.5	25.5	69.9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위해 19,800천원을 집행하여 식중독에 예방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근절과 함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5,760천원을 집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5명/24,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39개소/9,6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5명/24,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39개소/7,440천원)	93%
'14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5명/30,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9개소/6,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5명/19,8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9개소/5,760천원)	70%

- 정성적 평가
  - 음식문화개선과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지도보다 진정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실감하는 기금사업의 추진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원 등을 통하여 한식 조리법의 변화, 식재료의 변화, 서비스제공 방식의 변화를 통한 원가절감, 음식물쓰레기 방지, 합리적인 가격구성, 독창성을 주는 상차림을 유도하는 하는 등 기금사업의 적극적 실천 및 사후관리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li> <li>◦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li> <li>◦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li> <li>◦ 포상금 지급의 지원</li> <li>◦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li> <li>◦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li> <li>◦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li> <li>◦ 그밖의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li> </ul>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및 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등을 시행함으로써 식품업계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기금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해 노력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원	30,000천원	신축적 집행	상
② 모범음식점 지원	6,500천원	고유목적 달성	상
합 계	36,500천원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식품위생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 15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사업 분야 등에 36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과징금 수입의 감소와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필요성의 증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임

###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로 기금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의 주요 재원인 과징금수입의 감소와 지속적인 이자율의 인자율의 인하로 식품진흥 기금 설치의 당초목적 달성을 어렵은 실정이므로 일반 타 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통한 재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91 / %	94 / %	49 / %	
	전 입 금				
	보 조 금	16 / 17.5	15 / 16.1	17 / 33.7	
	차 입 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 / 46.5	42 / 44.8	22 / 45.9	
	예 수 금				
	이자수입	5 / 5.0	4 / 3.9	4 / 8.1	
	기타수입	28 / 31.0	33 / 35.2	6 / 12.3	
지 출	합 계	91 / %	94 / %	49 / %	
	비용자성사업비	22 / 24.0	31 / 33.2	25 / 5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 탁 금	6 / 6.5	15 / 15.8	5 / 10.2	
	예 치 금	42 / 46.3	22 / 23.8	15 / 30.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1 / 23.2	26 / 27.2	4 / 7.5	

#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선진 농업기술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3.01.14. 조례 제1758호  
(가평군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영조례)
- 일부개정 : 2005.02.03. 조례 제1826호
- 일부개정 : 2009.01.05. 조례 제2043호
- 일부개정 : 2009.10.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 2009.11.01. 조례 제2081호
- 일부개정 : 2012.01.11. 조례 제223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조례 제2399호

###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	23	1,007	29	23	6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2013년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총 적립액 : 1,007백만원
- 현재 목표액 10억 도달하여 수입,지출로 기금을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회원단체 자녀 및 우수4-H회원에게 장학금 및 농업인단체 행사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기금조례 5년 연장)

○ 잘된점

-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재 138개 단체(3,873명)가 활동중에 있으며 기금을 활용한 장학금 및 행사지원으로 매년 가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단체육성에 크게 기여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	22	100	23	23	1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학금지급(12백만원,26명) ○ 농업인행사(10백만원,2일)	○ 장학금지급(12백만원,26명) ○ 농업인행사(10백만원,2일)	100%
'14년	○ 장학금지급(13백만원,26명) ○ 농업인행사(10백만원,2일)	○ 장학금지급(13백만원,26명) ○ 농업인행사(10백만원,2일)	100%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균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영조례	농업발전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	○ 농업인단체회원 자녀 및 4H회원 장학금 지급 ○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체의 전문교육 및 연찬 ○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현재 기금목표(10억)에 달성하여 2014.12.31일 기금조례를 일부 개정(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선진농업기술시대에 부응한 경쟁력있는 농업인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10억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쇠고기 수입개방 등 각국과의 FTA의 타결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지속 운영.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330	%	62	%	30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08	93	36	58	0.6	2	
	예수금							
	이자수입	22	7	26	42	29.4	9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30	%	62	%	30	%	
	고유목적사업비	23	7	22	35	23	7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00	91	10	16	7	23	
	예치금	7	2	30	4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 연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 설치연도 : 2008. 11. 03. 조례 제2026호(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 2009. 10. 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 2010. 01. 15. 조례 제2096호
- 일부개정 : 2010. 07. 05. 조례 제2126호(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 2010. 08. 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0. 10. 06. 조례 제2134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일부개정 : 2012. 01. 09. 조례 제2219호
- 일부개정 : 2013. 07. 10. 조례 제2317호(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14. 09. 30. 조례 제2372호(가평군 통합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 2014. 12. 31. 조례 제2405호(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15. 03. 02. 조례 제2420호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81	156	9,923	1,275	220	1,055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4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인원 : 123명
  - 장학금 지급액 : 155,523천원
- 잘 된 점
  -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조함.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인 3,000천원 범위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신청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함.
- 미흡한점 : 관내 주민 및 자녀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ex)특수고 진학, 학교밖 청소년 등)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조례상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어 가평군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발전방안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해 신청자격은 완화 하되 선발기준은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향후조치계획 : 관내 주민들이 고루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조례개정 검토

##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0	117	83.57	183	156	85.25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장학사업(140백만원, 108명)	장학사업(117백만원, 116명)	83.57%
'14년	장학사업(183백만원, 101명)	장학사업(156백만원, 123명)	85.25%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균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장학사업	183백만원	○ 지속적인 장학사업(장학금 지급)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 조성된 재원의 적립으로 수익발생을 통한 추가 재원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 및 유사성 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 적립기금 이자수익금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767	%	2,060	%	2,133	%
	전입금	1,600	91	1,850	90	1,850	8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	0	6	0	53	2
	예수금						
	이자수입	160	9	176	9	230	11
	기타수입			28	1		
지 출	합 계	1,767	%	2,060	%	2,133	%
	비용자성사업비	122	7	117	6	155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639	93	1,890	92	1,950	92
	예치금	6	0	53	2	28	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안정성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 2024년까지 목표액인 3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할 예정